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612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25.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1. 29. 선고 2021가단62902 판결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안성시 E 대 1,914㎡ 중 183/3,47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1. 2.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2. 17. 접수 제7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83/2,895 지분에 관하여, 1992. 6.

18.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2021. 2.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그 대상

부동산 지분의 범위를 183/3,474 지분으로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 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1. 11.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2. 3. 3.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22. 3.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22. 3. 3.에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5. 주식회사 F로부터 D에 대한 44,672,677원1) 상당의 카드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한다) 일체를 양수했고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83/579 지분을 소유하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2. 6. 18. 사망하여, 그 처인 H과 피고 및 D을 포함한 6명의 자녀들이 망인을 상속하였고, 이어 H이 2009. 6. 18. 사망하여 위 6명의 자녀들이 H을 상속하였다.

다. D은 망인의 사망으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83/3,474 지분(망인 소유 지분 183/579 ÷ 6)을 상속받았으나, 2021. 2. 10.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위 지분 전부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2. 17. 위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날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인 1992. 6. 18.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위 협의일로부터 5년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2021. 8. 20.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2)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참조).

3) 이에 더하여, ① 민법 제406조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를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속재산분할협정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문제일 뿐 법률행위의 성립시점 자체를 소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 점, ③ 민법 제1015조 후문은 상속재산의 분할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법률행위의 성립시점과 효력 발생시점이 상이한 점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④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재산(잠정적 공유상태인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할 의도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식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을 사실상 조장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협정의 사해행위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사해행위 성립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은 실제 그 상속재산분할협정이 성립된 날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서(갑7-1호증)의 작성일이 2021. 2. 10.으로 명확한 점, ② 위 협약서의 문언을 과거에 있었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단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로 ‘1992. 6. 18.’이 기재된 것은 등기예규 제438호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대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때는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2021. 2. 17. 무렵이자 위 협약서에 기재된 날짜인 2021. 2. 10.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주식회사 F의 D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

1) 관련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과 피고 사이에 2021. 2. 10.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D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183/3,47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1. 2. 10.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2 내지 4, 6호증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거해온 사실 및 망인의 생전에 함께 거주하면서 그를 부양한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채무상태에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지혜, 판사 이영범, 판사 이형석

1) 원금 20,977,486원 + 이자 23,695,191원